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현장 간담회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및 EU 산림전용방지법 최신 동향 공유

2025. 11. 26(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노주윤 주무관

목 차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현장 간담회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2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현장 간담회

EU 산림전용바지법 최근 동향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현장 간담회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인니 고론탈로주산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자연림 파괴 우려** 보도(기후솔루션)

- 생산된 목재펠릿이 대부분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되어 생산국에 탄소배출 전가



●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 한국 · 일본 대사관 앞 **목재펠릿 수입 중단 시위**(25.10)

OKTOBER 20, 2025 / PRESS RELEASE / BERITA

Aksi Damai Kedubes Jepang dan Korsel: Hentikan Deforestasi Indonesia akibat Ekspor Wood Pellet



AKSI DAMAI DI DEPAN KEDUTAAN BESAR JEPANG-JAKARTA

Jakarta, 20 Oktober 2025 — Hari ini 20 Oktober 2025 para aktivis lingkungan yang terdiri dari organisasi masyarakat sipil menggelar aksi damai di depan kantor Kedutaan Besar Jepang dan Korea Selatan di Jakarta. Aksi ini menyoroti dampak serius impor pelet kayu (*wood pellet*) oleh kedua negara tersebut dari Indonesia, yang dinilai mempercepat

제목

인니의 숲은 여러분의 연료가 아닙니다.

주장

목재펠릿 수입이 인니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이 산림파괴 및 탄소배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

요구사항

일본 및 한국 정부에 ①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수입 중단, ② 바이오매스 연료 정책 재검토, ③ 산림파괴 및 토착민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공식 요구

●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24, '25년 산림청 국정감사 시 **국외 수입 목재펠릿 공급망 관리 필요** 제기

○ (목적) 국외 산림 훼손을 통해 생산된 목재펠릿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

○ 국내 現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상 서류 검사만으로 **벌채 합법성** 인증이 부족하여 국외 현지 실사 시스템 도입 필요

○ 수입 목재펠릿의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문대림 의원)

● 인니산 목재펠릿 수입 관련 이슈



문대림 의원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배경) 現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도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
- 개정안 주요내용 ※ 의원실과 내용 협의 중

조항	문대림 의원발의(법안)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해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현지실사 할 수 있으며 <u>거부하거나 산림훼손 등의 우려 경우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음. 다만 개선사항 제시 및 산림훼손 중단 경우 해제할 수 있음.</u>
목재펠릿 원산지 등 정보공개	수입 목재펠릿의 <u>원산지, 목재제품 인증, 품질 등급, 수입업자</u>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음.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현장 간담회

EU 산림전용방지법 최근 동향

● EU 산림전용방지법 최근 동향

 EU 집행위원,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추가 1년 시행 연기** 요청('25.9.23)

- (배경) EUDR 이행을 위해 필요한 IT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행 차질 및 무역장애 발생** 우려됨에 따라 연기 필요
- 환경물순환경제담당 집행위원 **Jessika Roswall**은 EU 의회 환경위원장 및 이사회 의장에게 **서한 송부 및 시행일 연기 논의** 예정
- 집행위는 **문제 완화를 위한 기술·운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회 및 이사회와 **추가 연기 여부 및 후속 조치 협의** 진행 예정

● EU 산림전용방지법 최근 동향

① EU 집행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실사 의무 간소화** 관련 제안('25.10.21)

- (목적) 하위 공급망 운영자·거래자, 저위험국 영세·소규모 1차 운영자 실사 의무 완화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내용
적용시점	대중기업('25.12.30), 소영세기업('26.6.30)	대중기업 변동없음, 소영세기업('26.12.30)
간소화 대상	-	하위 공급망 운영자·거래자 및 저위험국 영세 및 소규모 1차 운영자
실사의무	EU 시장에 상품을 출시·유통하는 모든 공급망의 운영자 및 거래자는 실사 선언문(Due Diligence Statement) 제출	하위 공급망 운영자·거래자 : 상위 공급망 기업이 실사 수행한 경우 실사 의무 면제
		저위험국 영세 및 소규모 1차 운영자 : 1회 간단 신고로 정기 실사 의무 대체
전환기간	전환기간 없이 EUDR 시행 즉시 집행	기존 적용시점 유지, 대중기업 계도기간 6개월

● EU 산림전용방지법 최근 동향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정안 논의 동향

-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DR 개정안을 **긴급 입법 절차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1월 본회의**서 **입장 채택** 전망
- 긴급 절차에 따라 의회는 다음 **본회의(11.24~27)** 투표를 통해 의회 입장을 수립하고 **이사회와 삼자 협의를** 개시할 예정
- EUDR 시행 연기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마지막 본회의(12.15~18)** 이전에 입법기관 간 합의 필요하며 **합의 지연될 경우** 간소화 등 변경 없이 기존 시행일인 **'25.12.30일부터 현행 EUDR 규정 적용** 예정

감사합니다

질문은 잠시 기다려주세요

